

의안번호	2212166
의 퇴 인	유상범의원
회 답 일	2025.9.5.
추계번호	25D438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난민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증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5,600만원(연평균 1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5조)	151.2	151.2	151.2	151.2	151.2	756	15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행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난민위원회를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의무규정
2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제34조의2(취업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 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제45조의2(통역 또는 번역의 지원)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난민인정 재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는 사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는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을 받는 사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청 접수 시 또는 결정통지 시 통역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	미첨부: 사회적응교육 시행에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되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3	제34조의2(취업지원)	×	미첨부: 취업지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4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	
5	제45조의2(통역 또는 번역의 지원)	×	미첨부: 개정안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및 이에 따른 통역 또는 번역에 대한 수요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난민위원회는 총 50명¹⁾으로 구성되는데, 본 추계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현행 6명으로 유지되고, 증원되는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인 것으로 가정함
- 현행 난민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36명의 외부위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 현행 난민위원회 세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공무원인 위원

1)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은 다음과 같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공무원이 위원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증가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법무부 인권국장
-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 난민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은 현행 1회당 15만원으로 유지되고, 연간 회의는 28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법무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에 따르면, 난민위원회 외부위원 8명에 대하여 회의 1회당 15만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28회임

□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외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난민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증원되는 외부위원 인원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와 참석수당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은 36명, 연간 회의 개최 횟수는 28회,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15만원이므로 연간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는 1억 5,120만원임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난민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증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억 5,600만원(연평균 1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5조)	151.2	151.2	151.2	151.2	151.2	756	15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난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외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훈령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난민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현재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과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